

「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하고,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진로탐색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」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6.

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: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
- 사업기간: 2026. 7. ~ 12.
- 신청기간: 2026. 6. 22.(월) ~ 7. 3.(금)
- 지원내용:
 - 1) 일경험 청년 인건비 : 2,338,292원 (기업당 최대 4명)
 - 2) 4대보험 기업부담금(11.47%) : 약 268,200원
 - 3) 기업 운영비 : 월 20만원
 - 4) 멘토 수당 : 월 15만원
- 주 최: 행정안전부, 경상북도
- 주 관: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[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]
- 문 의: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☎ 053) 850-4806

2 신청자격

○ 참여대상

-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
- 경상북도 내 고용 10인 미만*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

*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(5월말 기준)

○ 참여요건

-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
-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

❖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(종합적으로 판단)

- ▶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▶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
- ▶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
- ▶ 재무제표,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
- ▶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,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

참여 제외 대상

-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**사회적기업**인 경우
※ 단,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가능
-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(급여, 수당 등)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
-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*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*
* 공표일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
-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·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*
* '24년~'25년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3 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

- 2026년 7월 ~ 11월(5개월)

○ 지원내용

① 일경험 청년* 인건비

- 배정인원 :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
- 지원금액 : 청년 1인당 2,338,292원 (세전)

※ 시급 11,188원, 주 5일, 주 40시간, 1일 8시간(09:00~18:00)

* 일경험 청년

- 연령기준 :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
(1986년 1월 2일 ~ 2007년 1월 1일 출생자)
- 지역요건 :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소재지 거주자
- 고용상태 :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(4대보험 미가입자)

일경험 청년 참여제한

-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-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
-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(국가·지방정부)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
-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
② 4대보험 기업부담금(11.47%) : 청년 1인당 약 268,200원

③ 기업 운영비 :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20만원

※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

④ 멘토* 수당 :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15만원

※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

* 멘 토

-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(관련 **경력 1년 이상**)
- 멘토 역할
 - 주 **1회 이상** 일경험 청년과 **정기면담** 실시 후, 면담일지 작성
 - 매월 멘토링 운영실적 제출

<참고>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

프로그램 출석률	지급액(참여청년 1인당/월)	
	기업	멘토수당
90% 이상 출석	20만원	15만원
70% 이상 ~ 90% 미만 출석		13만원
60% 이상 ~ 70% 미만 출석	16만원	10만원
50% 이상 ~ 60% 미만 출석		9만원
40% 이상 ~ 50% 미만 출석	12만원	7만원
20% 이상 ~ 40% 미만 출석		6만원
20% 미만 출석	미지급	미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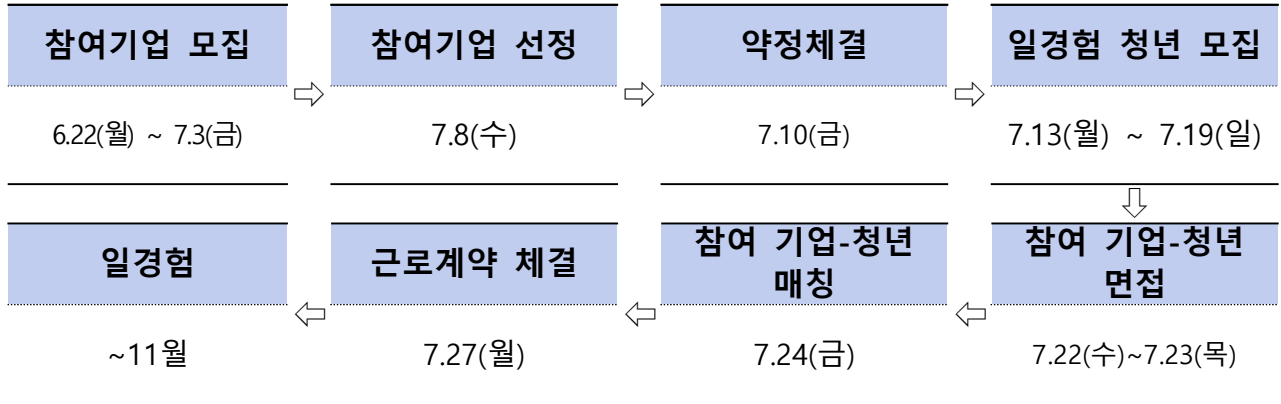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방법

- 참여기업 선(先) 지급 후, 증빙자료 확인하여 사후 지급

○ 기업역할

- ① 일경험 청년 채용 및 직무 기반 과업 부여
- ② 담당 멘토 지정
- ③ 일경험 청년 면접 진행 및 근로계약 체결
- ④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(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 면담)
- ⑤ 일경험 청년 출결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(월별)
- ⑥ 일경험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협조
- ⑦ 운영기관의 현장점검, 모니터링 등에 협조

○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: 2026. 6. 22.(월) ~ 7. 3.(금)

○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 (E-mail : gbsecenter@daum.net)

※ 파일명 : [청년 일경험] 참여기업명

○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	필수
1	[서식1] 참여기업 신청서	필수 제출
2	[서식2] 참여기업 운영계획서	
3	[서식3] 참여기업 확인서	
4	[서식4] 참여기업 서약서	
5	[서식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6	[서식6] 근무현장 사진	
7	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1부	
8	법인등기부등본 1부 *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	
9	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*마을기업 지정서, 협동조합 인가증 등	
10	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 *조회기간 : 2025. 12. 1 ~ 2026. 5. 30	
11	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	
12	가점 증빙서류 *7p 선정기준 참고	해당시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

○ 문 의: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☎ 053) 850-4806

5 심사 및 선정기준

○ 심사방법: 서면심사

-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

○ 선정결과 공고

- 공고일 : 2026. 7. 8(수) 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공고방식 :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

○ 선정기준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배점
참여기업 규모	• 전년도 기준 매출액(15점) • 상시고용인원(10점) ※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	25
직무설계 적정성	•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• 참여청년의 업무 난이도 • 단순·반복 업무 여부 • (일자리창조형)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, 실행 가능성	25
지원 및 관리체계	•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 지정 • 근무환경 •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보	25
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	•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기여도 •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 여부 •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 여부	25
가점	•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(5점) •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(5점)	10
합계(가점 제외)		100점

6 유의사항

-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(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)
-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추후 확인될 경우, 참여중단 및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

7 참고사항

○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의 범위

-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·단체
-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
(예: 사회적경제지원센터, 청년센터 등)
-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
(예: 사회적경제연합회,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)

○ 사회적기업 참여 가능 여부

-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참여 가능

참여 여부	구 분
가능	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
불가	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
불가	비영리법인·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

○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

유형	우선배정 대상 기업
에너지	•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
통합돌봄	• 노인·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
기타 국책사업	• 먹거리, 주거, 문화·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·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

○ “[붙임1] 참여기업 신청서” 중 일경험 유형

① 취업형

-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

※ 전체 참여청년의 90% 이하

② 일자리창조형

-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, 참여청년을 팀 단위(2~4명)로 기업과 매칭

※ 전체 참여청년의 10% 이상

- (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)

-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(직업)을 기획·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

- (창업지원 조직)

-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, 창업지원·컨설팅·교육·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

※ (예시) 사회적경제지원센터,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, 창업보육센터, 창업지원단 등

❖ 새로운 직무 아이템

- ▶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·재설계하는 것

< 신규 직무 예시 >

유형	기본 직무	(예시) 신규 직무
돌봄	요양, 방문서비스 제공	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
주거	주거취약계층 지원, 친환경 도시 조성	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
로컬푸드	도시락, 밀키트 제공	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

○ 일경험 청년 참여인원

모집시군	모집인원(명)	모집시군	모집인원(명)	모집시군	모집인원(명)
경산시	13	성주군	3	울진군	2
경주시	12	안동시	8	의성군	3
고령군	3	영덕군	2	청도군	3
구미시	21	영양군	2	청송군	2
김천시	7	영주시	5	칠곡군	5
문경시	3	영천시	4	포항시	21
봉화군	2	예천군	2	합계	
상주시	3	울릉군	2	경상북도	128

○ 일경험 청년의 근무조건

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‘근로자’에 해당
- 근로시간 : 주 5일(주 40시간), 1일 8시간(09:00~18:00)
- 휴게시간 : 12:00 ~ 13:00 (1시간)
- 연장근로시간 : 주 12시간 이내 (당사자 간 합의 필요)
 - ※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
 - ※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가산임금은 참여기업 자부담

○ 근로계약 체결

- 「표준근로계약서」를 기본으로 근로계약 체결
-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,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*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여청년에게 교부하여야 함

* 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)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

○ 일경험 청년 대상 직무교육

-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직무교육(20시간)*에 협조

* 온·오프라인으로 진행

-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

○ 일경험 프로그램 부적합 예시

- 참여청년 수행직무 또는 직무개발 아이템이 불명확한 경우
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
- 과업이 단순·반복적이며 직무역량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
- 직무교육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지시 중심 업무 수행
-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